#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농업과 기업 간 상 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2. 28.

전라남도지사.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5. 12월까지
- O 지원규모: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약 20개소)
  - 사업비 : 보조 589백만원 ※자부담 별도(20%)
- O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 ①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 식품·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 ②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 2 참가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전남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 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 5인이상 등록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5인이상 작목반
    - \*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타시도 소재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외식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외식기업\*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가공업), 제3호 (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4.(화) ~ 3. 25.(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전자우편(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jn6center@naver.com) ※ 사업수행기관 :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061-750-5294)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 ① 생산지원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협약서, 계약재배 표준계약서, 확약서 (붙임1)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23~24년 재무제표(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가입자명부(24년말기준)
- · 법인(단체)명의 통장 사본 및 통장 잔액증명서(신청 자부담금 이상 잔액 확인용)

· (식품·외식기업 확인서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식품 제조 혹은 음식업 필수)

#### ② 이용지원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협약서, 계약재배 표준계약서. 확약서 (붙임2)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신고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기맹본부확 인서류(프랜차이즈 기맹본부만 해당)
- · 23~24년 재무제표(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가입지명부(24년말기준)
- · 법인(단체)명의 통장 사본 및 통장 잔액증명서(신청 자부담금 이상 잔액 확인용)
- · (생산자단체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선정통보 : 선정 생산자단체(식품기업) 개별 직접 통보

# 4 지원절차

| 절차           | 주요내용                                               | 진 행 일 정                 |
|--------------|----------------------------------------------------|-------------------------|
| 사업공고         | - 전남 <del>농촌융복</del> 합산업 홈페이지(www.전남6차산업.com)      | '25.2.28.(금) ~ 3.25.(화) |
| Û            |                                                    |                         |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전자우편: jn6center@naver.com)                  | '25.3.4.(화) ~ 3.25.(화)  |
| Ŷ            |                                                    |                         |
| 선정평가         | 지원기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평가 ※ 1회차 지원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은 현장점검 | ~ '25. 4. 18.(금)        |
| Û            |                                                    |                         |
| 선정평가<br>결과통보 | 지원기관 :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 '25. 4. 23.(수)        |
| Û            |                                                    |                         |
| 협 약          | 지원기관 : 선정기업은 전남6차센터 방문 및 협약                        | ~ '25. 4. 30.(수)        |

- \* 1)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 기타사항

-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O 제출(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가 시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후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세부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비가 교부, 집행, 정산되므로 e나라도움 운영이 불가능할 시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내용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061-750-5294)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신청 바랍니다

# □ 사업 추진방식 사업계획 확정·통지 '24.12월 농식품부 → 지자체 $\downarrow \downarrow$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지자체 '25.1~2월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시업계획(붙임 1) 농식품부 보고(2월) $\downarrow \downarrow$ '25.2~12월 지자체 사업추진 $\downarrow \downarrow$ 농식품부 → 지자체·사업대상자 지자체 →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실태 점검 '25.3~12월 \* 반기별 1회 이상 점검결과(붙임 2) 농식품부 보고 $\downarrow \downarrow$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26.1월 지자체 $\downarrow \downarrow$

'26.1월 지자체 → 농식품부

사업 결과 보고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생산자단체)

### 가. 목적

1 |

- □ 식품·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 O 계약재배 관련 생산자단체 교육·컨설팅, 생산물 품질관리, 영농 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나. 사업 내용

- □ 운영기간 : 2025년 3월 ~ 12월
- □ 추진방안
  - O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 O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

#### < 지원대상 요건 >

- ① 참여대상: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 사업 공고일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우선 지원
- ②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
  -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 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 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 ③ 거래금액: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 ④ 지원기간: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 다만, ①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②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 ⑤ 지원배제: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단체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기업이 동 사업의 '이용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단체(Q&A 1~3번 참고)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 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 등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 선정기준 고려사항 >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 ② 연계의 지속성: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 ④ 파급효과: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O 지원범위

- ① 교육 및 컨설팅 : 작물 재배 관련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 등의 비용
- ② 품질관리 : 계약재배와 관련된 인증 수수료(GAP 등), 품질·안전성검사, 위탁관리, 종자·비료 등 생산요소 변경(차액),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 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하고,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1년)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③ 영농환경 개선 :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 ④ 공동 장비 및 시설 임차·관리비 :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산물·농 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공동 시설과 파종·경작 ·방제·수확·운송용 공동 장비 등을 임차·관리(정비 등)하는 비용
- ⑤ 기타 : 협의회, 간담회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O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5백만원** 이내(자담5백만원)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50백만원** 이내(자담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국비·지방비·자부담비를 포함한 금액임

# 다. 예산집행 기준

※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

| 항목          | 내역               | 지급기준                          | 비고                                                                                                      |
|-------------|------------------|-------------------------------|---------------------------------------------------------------------------------------------------------|
| 교육 및 컨설팅    | 강사·컨설팅비          | 실비<br>(강부는<br>자체 장산<br>기준 적용) |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비                                                                                       |
|             | 매뉴얼개발<br>및 보급비   | 실비                            |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
|             | 선진지 견학비          | 실비                            | 우수사례 견학 * 국내에 한함                                                                                        |
| 농산물<br>품질관리 | 인증비,<br>검사비 등    | 실비                            | 농산물 품질 제고                                                                                               |
|             | 생산요소 변경          | 실비                            | 생산요소 변경 또는 신규 적용에 따른<br>발생 차액 * 정산 시 비교견적 제출                                                            |
|             | 시범포 조성           | 실비                            | 품목(품종) 테스트                                                                                              |
|             | 위탁 수행비           | 실비                            |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
| 영농환경 개선     | 영농 폐기물<br>처리비 등  | 실비                            |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
| 공동시설·장비     | 임차관리비            | 실비                            |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
| 기타          | 행사·홍보비           | 실비                            |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홍보 등                                                                                       |
| 추가 증빙       | 계약재배 이행<br>여부 확인 | -                             | 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br>위한 서류(붙임6, 필수 제출)<br>*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 거래송장표,<br>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등 제출 |

# 2 기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가. 목적

- □ 지역의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 하는 중소식품·외식업체 지원
  - O 계약재배 관련 중소식품·외식업체의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 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 나. 사업 내용

- □ 운영기간 : 2025년 3월 ~ 12월
- □ 추진방안
  - O (계획수립) 식품·외식업체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 O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외식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

#### < 지원대상 요건 >

- ① 참여대상 : 식품·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사업 공고일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우선 지원
  -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 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 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 ② 계약유형: 농가·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농가·생산자단체-제3자(지역 농협 등)-식품·외식업체(지원 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 하는 경영체와의 계약은 제외. 다만, 50% 이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은 지원 가능) \* 농가와 계약재배하는 경우 최소 5농가 이상
- ③ 거래금액: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 ④ 지원기간: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 다만, ①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②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
- ⑤ 지원배제: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농가생산지단체가 동 사업의 '생산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Q&A 1~3번 참고)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 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 ② 연계의 지속성: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 ③ 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 ④ 파급효과: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O 지원범위

- ※ 가공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①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 계약 작물의 정상적 재배 이행 확인과 품질· 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 업무 위탁, 시험·분석, 검수 등"의 비용
  - \*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 1천만원 한도 내 지원(국비·지방비의 합 기준, 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불인정)
    - →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 관리'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양·내용 기록 증빙 필요
- ② 교육 및 컨설팅 : 식품·외식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비용
- ③ 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 : 계약금 지급에 따른 이자(계약금 1억원 한도로,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계약금 지급 시점~납품 시점까지 지원),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
  - \* 농식품부 '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aT 수행, 참고 1) '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정산 불가
- ④ 판촉·홍보 :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조하는 취지의 기업 홍보, '지역 농산물(광역지자체)' 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품 홍보(포장재 동판 제작, 판촉행사 등)

- ⑤ 시설 및 장비 임차·관리비 :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보 관·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관리(정비 등)하 는 비용
  - \* 필요 시 시설·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
- ⑥ **신제품 개발**: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등의 비용
  - \* 신제품 개발 항목 선택 시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국 비·지방비의 합 기준.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는 적용 제외)
  - \* 해당 차수(연도) 지원 종료 시까지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여야 함(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정산 불가 또는 해당 지원금액 환수)
  - \* 신제품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은 사업지원연도 내(1~12월)
- (7) 기타 : 협의회, 간담회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O (예산지원) 실비 지원
  -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②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5백만원(국비·지방비·자부담금의 합)
    - \* (1)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비·지방비·자부 담금의 합)까지 지원가능, (2) 신제품 개발 시 개소당 최대 37.5백만원(국비·지방 비·자부담금의 합)까지 지원 가능

# 다. 예산집행 기준

※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

| 항목                    | 내역                         | 지급기준                          | 비고                                                                                                                                                                                                         |
|-----------------------|----------------------------|-------------------------------|------------------------------------------------------------------------------------------------------------------------------------------------------------------------------------------------------------|
| 작물 재배<br>및 품질관리       | 인건비,<br>업무위탁비,<br>시함.분석비 등 | 실비                            | 계약재배 이행상황 점검, 품질안전·관리 *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1천만원 한도 내지원(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불인정),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 관리'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업무 범위·양·내용 기록 증빙 필요                            |
| 교육 및<br>컨설팅           | 강사비,<br>교육참가비,<br>자문료 등    | 실비<br>(강부는<br>자체 정산<br>기준 적용) | 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br>위한 교육·컨설팅 등                                                                                                                                                                        |
| 계약재배<br>거래대금<br>관련 금융 | 이자, 보험료                    | 실비                            | 계약재배 계약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이자*, 구매이행 보증보험료**  * 계약금 1억원 한도,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기준금리 적용. 계약금 지급 시점~납품 시점까지지원 / 계약서에 계약금 명시, 지급내역 등 증빙  * 농식품부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참고1)(정산시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타 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요청(지자체 + 농식품부)) |
| 판촉·홍보                 | 판촉비<br>홍보비                 | 실비                            |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br>강조하는 취지의 기업 홍보, 지역(광역<br>지자체) 농산물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br>제품 홍보*<br>* 포장재 제작의 경우에는 동판제작만 정산 가능                                                                                             |
| 시설·장비                 | 임차·관리비                     | 실비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농산물 규격<br>등 충족을 위해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br>확 후 운송·보관·전처리 단계에서 필요<br>한 시설·장비<br>* 필요 시 시설·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                                                                                               |
| 신제품 개발                | 시함분석비,<br>인증수수료<br>개발 위탁비  | 실비                            |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 신제품 개발 목적으로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국비·지방비의 합)  * 해당연도 지원 종료시까지 품목제조보고 완료 필수                                                                                                          |
| 기타                    | 행사비                        | 실비                            |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
| 추가 증빙                 | 계약재배 이행<br>여부 확인           | -                             | 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br>위한 서류(붙임6, 필수 제출)<br>*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 거래송장표,<br>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등 제출                                                                                                    |

# 붙임 7 시업계획 관련 Q&A

문1

생산지원(작목반)이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O 단체명만 변경하고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단체로 간주 하므로, 기존 지원 횟수를 포함한 참여 횟수를 적용합니다.
  - 이는 최종 회차까지 지원이 완료되기 전 중도에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구성원이 70% 이상 변경된 경우\* 해당 단체명을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 '(신규 농가 수/최종 농가 수)x100%'로 계산한 결과가 70% 이상이어야 하고, 이전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타 단체 소속이었던 경우도 포함)가 이전과 동일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규농가로 보지 않음

문2 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O 동일한 농산물(품종)의 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고 1회차로 인정합니다.
  - 다만, 품목, 생산자단체, 식품기업의 단순 추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3 계약재배 농산물의 종류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계약재배 농산물(품종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 차로 인정합니다.
  - 농산물의 종류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1회차로 인정하되, 다만 이전 종류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을 종료<sup>\*</sup>합니다.
    - \* 이후에는 이전 종류 농산물에 대한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동 사업 지원액(거래 금액의 1/3 미만)을 산출해야 함
- O 또한,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라도 '스마트팜' 도입 등 영농형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

#### 문4 계약재배 실적은 그 해 사업연도로 한정되는건지?

- 품목별 농산물 특성과 가공용 원료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 및 공급실적을 반영한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이 다음 연도 1~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관리가 가능,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서와 공급실적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재배 실적으로 인정 가능

문5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O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의 다양화,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등 신제품 개발로 인정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문7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 에서 배제되는지?

- 작황부진 및 자연재해의 경우 농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최종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피해량, 피해면적)**이나 사유서 등 증빙서 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검토를 통해 제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8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품목별로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 구입** 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범포 품목과 면적 에 맞게 적정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시범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지원배제 조치

## 문9 계약재배지 증빙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 계약재배지 증빙서류는 **농가명단에 등록된 생산자의 계약재배지가 명시**된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 (예시) 계약재배지가 명시된 표준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자조금납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참고 1 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증권 지원사업 안내

※ 하기 내용은 2024년 사업 세부 안내사항으로, 2025년에는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 사업 개요

- 중소식품제조·식자재 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정부 에서 지워
  - 보증금액 : 최대 2억원, 보증기간 : 1년 이내, 보험요율 : (개인) 연 1.387%·3.481% / (법 인) 연 0.533%~4.973%
  - 보험사 : 서울보증보험(주)
- O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은 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온라인접수 : www.foodbiz.or.kr(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 \* 오류 방지를 위해 chrome으로 접속 권장
  - \* 기타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4

## □ 지원 대상

-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지원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건강 기능식품제조업, 양곡가공업(다만, 식품소분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 처리업은 학교 등 단체급식 납품처인 경우에 한함)
- 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경우, 신청일 전월 까지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 위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한함(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매출)이 있는 업체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공정 과정 없는 단순유통) 거래 제외 \*\*\*\* 선가입 후지원 불가

### □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피보험자)

O 국산 농축산물을 공급(판매)하는 업체·국산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등

### □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 O 매출확인서\* 사본 1부
  - \* 법인, 개인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 필) 등
- 수입금액 증명원, 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 필) 등
-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사본(견적서 및 원산지증명서 첨부)
- O (식품소분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업체) 급식납품계약서 등

### □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서울보증보험)

- 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확인서'
-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요구하는 자료
- 보험가입 : 서울보증보험(주)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www.sgic.co.kr)

### □ 기 타

- O (유의사항) 사업예산이 소진 시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 업체가 허위서류 또는 허위실적 등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한 수입
- 농축산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에서 배제
- (실적제출) 보증보험 증권 등록[www.foodbiz.or.kr(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사업 종료 후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을 aT에 제출하여야 함

- ※ 1차 거래실적 : 보험가입일~보험가입연도 12.31 / 2차 거래실적 : 차년도 1.1~보험만료일
- ※ 최소 구매의무액 : 보증금액의 80% 이상(미달성시 차년도 보증보험료 지원 배제)
- O (기타사항) 보증보험 지원업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보증보험 계약해지 시 보증금액 지원한도 일부 부활
  - 원료 공급 불가 등 지원업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보증보험 계약해지 시 월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한도금액 부활

####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절차 >



